

대통령령 제 호

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소속 학교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공단”을 “공단”으로 한다.

제4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학교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공단”을 “공단”으로 한다.

제53조제1항 중 “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”를 “공단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5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교직원등이 소속하였던 학교기관의 장에게”를 “공단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63조의2제1항 중 “퇴직 당시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”를 “공단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7조(재난부조금) ①·② (생략)	제47조(재난부조금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보상준용법 제42조에 따라 재난부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재난부조금 청구서에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상황 확인서를 첨부하여 <u>소속 학교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 이 경우 공단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, 청구인이 제1호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공단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·2. (생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제47조의2(사망조위금) ①·②	제47조의2(사망조위금) ①·②
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③ 보상준용법 제43조에 따라 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조위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<u>학교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</u>하여야 한다. 다만, 보상준용법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부양하던 교직원에게 지급하려는 경우에 공단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·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있으며,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공단에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 략) 제53조(퇴직급여 청구) ① 연금 준용법 제43조·제51조에 따라 퇴직연금·조기퇴직연금·퇴직연금일시금·퇴직연금공제일시금	1. 2. (현행과 같음) 제53조(퇴직급여 청구) ① ----- ----- -----

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
사람은 퇴직급여 청구서를 소속
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
한다.

② 학교기관의 장은 제1항에
따른 청구서를 받은 경우 지체
없이 급여의 제한사유, 「소득세
법」상 해당 연도의 다른 퇴직소
득,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
미납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
을 조사·확인한 후 그 청구서를
공단에 보내야 한다.

③·④ (생략)
제54조의3(퇴직유족연금·퇴직유
족연금부가금·퇴직유족연금특별
부가금·퇴직유족연금일시금·퇴
직유족일시금의 청구) ① 연금준
용법 제54조·제55조·제58조에
따라 퇴직유족연금·퇴직유족연
금부가금·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
금·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

-----공단에-----

-----.

② <삭 제>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54조의3(퇴직유족연금·퇴직유
족연금부가금·퇴직유족연금특별
부가금·퇴직유족연금일시금·퇴
직유족일시금의 청구) ①

직유족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
퇴직유족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
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직원등
이 소속하였던 학교기관의 장에
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 학교기관의 장은 제1항에
따른 청구서를 받은 경우 지체
없이 급여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
조사·확인한 후 그 청구서를 공
단에 보내야 한다.

제63조의2(퇴직수당의 청구) ①
연금준용법 제62조제1항에 따라
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
직수당 청구서를 퇴직 당시 소속
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
한다.

② 학교기관의 장은 제1항에
따른 청구서를 받은 경우 지체
없이 재직기간의 감축사유, 급여
의 제한사유 등 급여 지급에 필

-----공단에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<삭 제>

제63조의2(퇴직수당의 청구) ①

-----공단에-----

-----.

② <삭 제>

<u>요한 사항을 조사·확인한 후 그</u> <u>청구서를 공단에 보내야 한다.</u>	
-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부 교육협력과	
연 락 처	(044) 203-6461